

[(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679호]

## 「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지원모집 공고」 영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제조전환 및 구조 효율화 지원사업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영천시가 지원하는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영천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영천시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재)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장

### 1 지원개요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3개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기관명
혁신화&성장촉진	신규아이템 발굴 기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규아이템 발굴을 위한 관련 산업 및 시장 조사 지원</li><li>기업 성장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전략 수립 지원</li></ul>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
인식 개선	근로자정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기업 채용근로자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문화 및 복지교육</li><li>지역문화/근로자 복지·노무/지역정책/현장탐방 등</li></ul>	
사업화 지원	특허로드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MATRIX분석을 통한 공백기술도출</li></ul>	(재)경북테크노파크
	국내특허출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구범위 최적화 작성 및 출원</li></ul>	
외국 인력 채용	지침·안내서 통번역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침·안내서 등 통·번역 지원지원</li></ul>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
	비자발급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외국인근로자 장기거주 및 기업정착을 위한 비자발급 관련 컨설팅 지원</li><li>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및 취업비자(E-7, E-9) 우선지원</li></ul>	

○ (지원금액)

구분	프로그램명	최대지원금 (현금, 천원)	선정건수	기업 부담금
혁신화 & 성장촉진	신규아이템 발굴·기획지원	6,000	3건 내외	* '24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5%), 10억원 이상(10%)  *** 컨설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부담금 없음
인식 개선	근로자정착교육	직접지원	1건 내외	
사업화 지원	특허로드맵 지원	17,000	3건 내외	
	국내특허출원 지원	3,000	3건 내외	
외국 인력 채용	지침·안내서 통번역지원	1,500	1건 내외	
	비자발급 컨설팅	1,500	2건 내외	

\* 기업당 지원금 기준 최대 5천만원 내 각 프로그램 복수지원 가능

\* 평가 결과와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 건수'는 변동 가능

ex) 지원금이 20,000천원일 경우 예시

※ 기업 자부담+부가세(B+C): 4,200천원

(단위: 천원)

지원금	기업 자부담	합계	(지원금+자부담)의 부가세	총합
A	B	A+B	C	A+B+C
20,000	2,000	22,000	2,200	24,200

수행주체	수행내역	금액(예시)
① 공급기업(기관) → 수혜기업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4,200천원
② 수혜기업 → 공급기업(기관)	자부담+부가세 입금	4,200천원
③ 수혜기업 → 지원기관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자부담+부가세 입금증, 결과보고서 제출	-
④ 지원기관 → 공급기업(기관)	지원금 이체	20,000천원

\* 단, 지원기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시 지원기관 담당자 문의 필요.

- **(신청자격)**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의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전·후방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0
	· 지원대상 제품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내용 타당성 (40)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30
	·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0)	· 지원대상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0
	·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
가점 (3)	· 우대가점 참조	3
<b>배점 합계</b>		<b>103</b>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3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장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2
6	· 기업 지원 받는 제품의 수요처(납품처)가 지역 내 중소·중견 기업인 신청기업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수요처 확인 가능한 서류	3

### ③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영천시 소재(본사, 공장 기준)의 모빌리티 가공부품산업 전·후방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여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혹은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⑥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기업**

⑦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⑧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이 제한됨

- 지원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중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를 결정함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4 추진절차 및 일정

#####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25년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의 “우대가점”에 따라 가점 확인 (최대 3점 인정)

#####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제 등의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실시(필요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 1인이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가 가능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현장실태조사 (대면)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평가위원 및 담당간사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면담조사 (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 (선정평가) 지역의 선정·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위원회 진행, 결과정리 순으로 진행

- **(결과통보)**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승인 요청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선정결과 통보
  - \* 선정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을 제출하되 세부 과제별 결과보고 기한 상이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9. 1.(월) ~ 9. 19.(금)
- (접수기간) 2025. 9. 1.(월) ~ 9. 19.(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 사업신청 접수는 전산접수로만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 시간 준수 요망
  -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첨부서식 제출 또는 증명서 발급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상세사업계획서 [서식2] ※ 복수 지원 시 지원프로그램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③ 기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3] 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⑤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서식5] ⑥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서식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최근 3개년 재무제표(창업3년 미만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해당 시	⑪ 수출실적증빙(직접수출, 간접수출) ⑫ 공장등록증 사본 ⑬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⑭ 우대가점 증빙자료 ⑮ 기타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제품, 기술 홍보자료 등)

⑥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⑦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별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재)경북테크노파크	이승욱 책임	054-450-0552	sulee@gbtp.or.kr
	(재)경북자동차 임베디드연구원	김기환 선임	054-339-0051	khkim@givet.re.kr